

2021년도 제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11.(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6건(안전번호 제2021-23506호~2378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23506호(순번 1번), 23508호~23512호(순번 3번~7번), 23514호~23518호(순번 9번~13번), 23521호~23523호(순번 16번~18번), 23525호~23528호(순번 20번~23번)은 블로그에서 해외 영상물(방송)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1-23507호(순번 2번), 23513호(순번 8번), 23519호(순번 14번), 23520호(순번 15번), 23524호(순번 19번)는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23529호~23788호(순번 24번~28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9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283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3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및 △△△,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 ■’ 등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84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의 전체인 24분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물을 채증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됨. 2021. 3. 11. 현재 해당 게시물을 게시자가 삭제함.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의 1화~12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의 전체인 23분 55초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물을 채증한 이후에 게시자가 삭제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16번~18번의 경우 2021. 3. 11.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거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한편, 순번 2번(2건), 8번(1건), 14번(2건), 15번(1건), 19번(1건)의 게시물은 2021. 3. 11. 현재 이용자에 의해 삭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일에도 삭제 여부를 확인함.
- B 위원: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집행 사례를 추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3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4번~28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VIVA LA VIDA'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5번은 웹하드에서 음악앨범 'VIVA LA VIDA'와 'Left Right Left Right Left'을 각각 280캐시와 230캐시에 제공 중임. 워너뮤직코리아가 발매한 영국 출신의 얼터너티브 록 그룹 콜드 플레이의 2008년, 2009년 앨범임.

(영화 '새해전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새해전야'를 510코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50분 25초를 제공하고 있음.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서 2021. 2. 10. 개봉한 국내 영화임.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그린 영화임.

(영화 '툼과 제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0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툼과 제리'를 18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1분 1초를 제공하고 있음.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주)에서 2021. 2. 24. 개봉한 미국 영화임.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는 뉴욕 한 고급 호텔에서 카일라(클레이 모레츠)가 소시오패스 꼬마 생쥐 '제리'를 잡기 위해 고양이 '툼'을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다룬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

번 24번~28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24번~28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4번~28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23506호~23788호(순번 1번~28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1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